

학생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

I 추진배경

- 최근 디지털 성범죄*가 성희롱, 성착취물 전파,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조성
 - *디지털성범죄: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유포, 협박, 전시·판매하는 등 사이버공간, 미디어,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
- 특히,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및 죄책감이 낮아져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
 - ※ 아동·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청소년 98%가 범죄라고 인식 못함('21. 서울시 사례분석)
- 이에,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에서 보호하고,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'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' 마련이 시급

II 현황 및 문제점

□ 학교 교육부실로 인한 청소년·청년층의 성범죄 피해 확대

- (인식부족)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동기를 분석*한 결과 '범죄인식부족'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, 이는 학교의 성범죄 인식 교육의 부실에서 기인
 - *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가해동기 분석('21. 서울시): 범죄인식부족(21%), 재미난 장난(19%), 호기심(19%), 충동적(16%)
- (청소년 피해집중) 초~고등학교 시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해, 10~20대 청소년·청년층에 집중적*으로 발생
 - *청소년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연령대('20. 치안정책연구소): (1위)16세, (2위)13~15세, (3위)7~12세
 - ※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부실로 인하여, 아동·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시기에 자행되는 그루밍·디지털 성범죄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

□ 미약한 처벌법 및 법체계 부실로 인한 성범죄 억제력 약화

- (처벌미약)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지만, 체포된 피의자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소수*에 불과하여, 범죄를 억제할 수 기제 약화
*박사방·N번방 디지털성범죄 검거현황('20. 경찰청): 664명 중 86명 구속에 불과
- (부실한 법체계) 모호한 경계에 있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이 어렵고,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범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큼
※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, 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□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제도적 장치 부족

- (인프라 부족)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(상담·수사법률지원·의료지원)이 아닌 형식적 지원(불법촬영물 삭제)에 국한*되어있고, 지원역량도 부족한 실정
*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현황('19, 여성가족부): 삭제지원(4만 여건), 상담지원(2,605건), 법률·의료지원(334건)
※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 요원은 비정규직 5명에 불과('20. 박광온의원실)
- (제도적 미비)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피해자 구제·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피해상담창구, 신고센터 설치, 매뉴얼 마련 미비
※ 피해자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 부실로 피해자는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,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는 악순환 및 사각지대 발생

Ⅲ 개선 방안

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학교 현장 교육 강화

- (교육강화) 학교현장의 놀이와 폭력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공동체교육을 통하여 성범죄 억제와 재발방지 효과 제고
※ 학교 인권·공동체 교육을 통한 성범죄 가해인식 및 피해인식을 강화하고, 징계·처벌위주의 대처에서 회복적이고, 교육적인 관점의 교육 실시
- (선제적 교육) 선제적인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성범죄 발생 전 자발적이고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계기 마련
※ 그루밍·디지털성범죄는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전에 빠르고 선제적인 교육 실시

□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범망을 피하지 못하게 처벌법 강화

- (처벌강화) 중대범죄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선진국* 수준으로 상향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

*미국: 사적 화상정보 취득만 해도 1년 이하 징역, 영국: 성적사진 유포 시 2년 이상 징역

- (법체계 강화) 범죄자들이 허술한 법체계를 못 빠져나가도록 그루밍 및 성범죄 예비·음모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체계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신설

※ 의제강간* 연령을 상향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도 신설·강화하여, 미성년자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

*성관계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과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

□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강화 및 제도적 창구 마련

- (지원센터 강화)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상시상담, 수사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,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

※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센터 설치 및 기능강화를 법률로 의무화 하고, 국회와 기재부와 협의하여 지원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 실시

- (지원제도 마련)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통로(상담창구·신고센터 설치)를 법률로 정하고, 성범죄 처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지침(매뉴얼) 마련

※ 피해자 중심의 지원제도 마련으로 피해자가 죄책감을 시달리지 않고 상담 및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

IV 향후 추진일정

- 학생보호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(안) 수립: '23년 1월
- 교육청·지자체·경찰서 등 관련 기관 대책 회의 실시: '23년 2월
- 디지털 성범죄 교육 강화를 위한 T/F팀 구성: '23년 2월
-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개정 및 강화를 위한 국회 논의: '23년 2월
-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재부 협의: '23년 2월